은행권 개선 TF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

은행-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: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

2023.3.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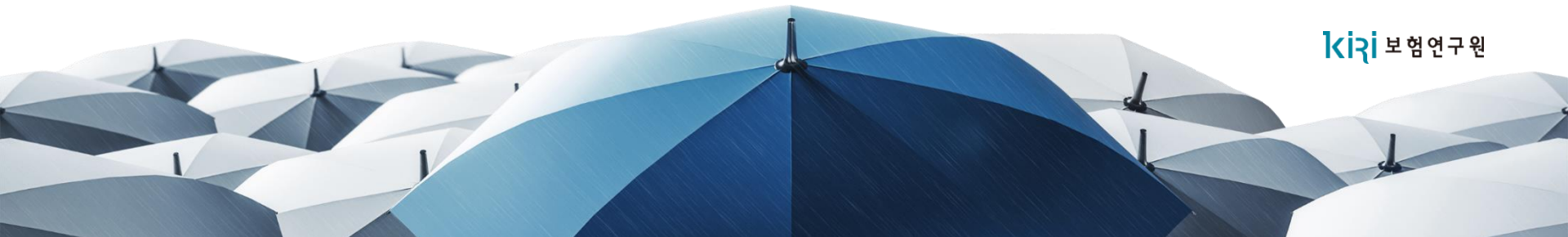

KiRi 보험연구원

보험회사 지급결제 업무 겸영 허용 방안

-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금융투자회사 자금이체업무 겸영 수행과 유사하게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
- 이에 따라 은행, 금융투자회사, 저축은행 등 업권간에 공정경쟁을 확보할 할 수 있음

리스크 해소 방안

-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차액 결제자금 정산에는 대행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음
- 보험회사는 일일 순채무한도(지급예정액 – 수신예정금액)를 대행은행에 예치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의 차단이 가능함
-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보험료 적립금 등과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운영하여 보험리스크가 결제용 자산으로 전이되는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
-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우선취득권 대상에서 배제하여 지급결제용 자산을 보호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

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

- 보험업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를 겸영 허용하여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
- 소비자는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계좌에서 보험료 납입, 보험금 지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- 더 나아가 소비자는 보험계좌를 통한 자산관리, 카드대금·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여 금융회사 선택권이 높아질 것임
-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접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,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은행·보험회사의 소비자 관계 개선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·상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
- 또한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, 결제성 예금 잔액 증가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폭은 예금금리 상승폭보다 높지 않다는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예대마진 축소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음

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비용에 대한 검토 필요

- 현재 보험업은 자금이체 수수료 등으로 매년 은행에 1,000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됨
-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로 인해 자금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계좌로 전환하여 이체하는 고객에 한하며 시스템 참여 비용,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신규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함
- 금융결제원 특별참가금 등이 현실적인 액수로 부과되어야지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로 인한 비용 절감이 보험료 할인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감사합니다.